

세이신 기타하이츠 규약

관리사무소 집무

1 월 4 일부터 12 월 28 일까지

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(오전 12 시~오후 1 시 제외)

전화 03-3878-1220 팩스 03-3878-1254

- 1 이 규약은 중요사항이다.
- 2 규약류는 일본어 문서를 정식으로 정하며 이 문서는 원문 요약 번역본이다.
- 3 이 문서에서 소유자란 동거인 및 임대세입자를 포함한다.
- 4 소유자는 관리비 등 기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.
- 5 소유자는 소유부분을 주택으로써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6 소유자는 주택을 셰어하우스로 쓰거나 불특정한 이에게 숙박하게 해서는 아니된다.
- 7 소유자는 공용부분이나 토지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8 소유자는 소유부분의 증/개축을 해서는 아니된다.
- 9 소유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물에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.
- 10 소유자는 공유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11 소유자는 관리조합의 허가 없이 주택의 리모델링을 행하면 아니된다.
- 12 소유자는 소형 조류, 관상어 및 장애인 보조견 외의 동물을 키워서는 아니된다.
- 13 소유자는 이웃에게 폐가 되는 소음, 악취, 매연 등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.
- 14 소유자는 관리조합이 정한 쓰레기 분리배출, 쓰레기 버리는 법이나 세탁용수 배수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된다.
- 15 소유자는 베란다 난간에 화분을 놓아서는 아니된다.
- 16 소유자는 베란다에 흙으로 화단이나 밭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.
- 17 소유자는 관리조합이 양식으로 정한 거주자명단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제출한다. 기재내용에 변동 발생 시에도 신고하도록 한다.
- 18 소유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단지 내 주차장에 세울 경우 관리조합과 계약하여 보증금을 내고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.
- 19 소유자는 본인 또는 방문객이 앞 조항의 계약차량 이외의 차량을 단지 내 임시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그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.
- 20 소유자 및 방문객은 허가 받은 장소 이외에 자동차나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아니된다.
- 21 소유자는 자전거를 소유 또는 사용 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정해진 등록료를 지불해야 한다.
- 22 소유자는 집을 반사회적 세력이나 그 구성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.
- 23 소유자는 집을 양도 또는 임대 시 계약서에 관리조합이 정한 사항을 계약해지사유로써 명시해야 한다.

2022 년 12 월